

건축허가 (부)동의여부 통보서

(갑 지)

건 물 명		건 축 주	
주 소			
건물구조	조, 지붕, 지하 대지면적	층 / 지상 층 m ² / 연면적	m ² / 건축면적 m ²
주된 용도		동의여부	[]동의 []부동의
소방시설			
소방차 전용구역	※ 「소방기본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된 대상에 한해 작성		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(부동의)함을 알려 드립니다.

년 월 일

〇〇소방서장

비 고

- 건축물이 변경 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설계변경·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·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
 -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 각 호에 대한 검토 자료(의견서)를 반영하여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
 -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
 - 건축허가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
- ※ 부동의 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 각호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의 하는 이유와 검토자료(의견서)를 읍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통보

부동의 사유 및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서

(을 지)

특정 소방대상물 현황	건 물 명		용 도	
	주 소			
	건물규모	지하 층, 지상 층, 개동 대지면적 m ² / 연면적 m ² / 건축면적 m ²		
부동의 사유				
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서	▪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 검토 의견			
	▪ 「건축법」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검토 의견			
	▪ 「건축법」 제50조, 제50조의2, 제51조, 제52조,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, 마감재료 등(방화시설)에 대한 검토 의견			
	▪ 기타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필요로 하는 사항			